

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(의안번호 제66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있어 고룡이 상표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신청시 상표사용각서 제출 폐지
(안 제3조제3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있어 고룡이 상표 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성군 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사용 신청 시 상표사용각서 제출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각서 내용 일부를 신청서에 명기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으로서
-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규제완화와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0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